

第234回国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4號

國會事務處

2002年11月8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14次本會議)

1.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계속)
2.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계속)
3.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계속)
4.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계속)
5.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
6.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
7.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8.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代案)
9. 都市開發法中改正法律案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11. 骨材採取法中改正法律案
12. 賃貸住宅法中改正法律案(代案)
13.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4.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15. 法律第3782號河川法中改正法律附則第2條의規定에의한補償請求權의消滅時效가만료된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16. 河川法中改正法律案
17. 女性發展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18.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中改正法律案
19. 2003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20. 2003년도에만기도래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대한출연동의안
22.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
23.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과견연장동의안
24.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
25.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
26.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
27.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
28.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律案
29.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
30. 關稅士法中改正法律案
31.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32.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
33. 特殊教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34. 學校用地確保에 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35.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36.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37.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38. 大韓民國學術院法中改正法律案
39.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40.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中改正法律案
41. 産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中改正法律案
4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43.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44.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45. 腦研究促進法中改正法律案
46. 科學館育成法中改正法律案
47.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
48.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9.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50.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案
51. 電氣通信基本法中改正法律案
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53. 放送法中改正法律案(代案)
54. 地方文化院振興法中改正法律案
55.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56. 산지관리법안
57.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58. 特許法中改正法律案
59.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案
60. 意匠法中改正法律案
61. 商標法中改正法律案
62. 辨理士法中改正法律案
63.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
64. 發明振興法中改正法律案
65. 韓國電力公社法中改正法律案
66. 海底鑛物資源開發法中改正法律案
67.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8. 地域信用保證財團法中改正法律案
69.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대안)
70.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代案)
71.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72. 藥事法中改正法律案
73. 母子福祉法中改正法律案(代案)
7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75. 結核豫防法中改正法律案
76.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
77. 醫療法中改正法律案
78. 水道法中改正法律案(代案)

- 79.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代案)
- 80.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
- 81.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16건)
- 82. 2003년도예산안
- 8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84.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附議된案件

1.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6
2.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6
3.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6
4.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6
5.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6.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7. 建設勤勞者の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8.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
9. 都市開發法中改正法律案(설송웅 의원 대표발의)(설송웅·심규섭·김민석·김윤식·이희규·이강래·정동영·송훈석·박용호·조한천·고진부·김덕배·박주선·유재규·장태완·장재식·이인제·김홍일·설훈·송영진·김화중·이근진·안동선·유용태·이재창·백승홍 의원 발의)	8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정부 제출)	9
11. 骨材採取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9
12. 賃貸住宅法中改正法律案(代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0
13.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홍일 의원 대표발의)(김홍일 의원 외 25인 발의)	10
14.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신현대·정병국·오세훈·김형오·이주영·장성원·조정무·황우여·이해봉·박종근·김학송·안경률·김병호·도종이·윤두환·현승일·정의화·이한구·이승철·이원형·박혁규·안영근 의원 발의)	11
15. 法律第3782號河川法中改正法律附則第2條의規定에의한補償請求權의消滅時效가만료된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강인섭 의원 대표발의)(강인섭·신기남·신현대·이근진·김희선·박주선·박인상·박희태·강창성·장영달·정동영·정동채·정세균·이강두·박상규·권기술·배기운·김성순·안상수·신경식 의원 발의)	11
16. 河川法中改正法律案(강인섭 의원 대표발의)(강인섭·신기남·신현대·이근진·김희선·박주선·박인상·박희태·강창성·장영달·정동영·정동채·정세균·이강두·박상규·권기술·배기운·김성순·안상수·신경식 의원 발의)	11
17. 女性發展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여성위원장 제출)	13
18.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中改正法律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정철기·임채정·송훈석·이재정·박양수·정범구·이창복·김정숙·권철현·정병국·전갑길·이종걸·허운나·장영달·김태홍·김희선·김화중·정세균·임종석·김경천·송석찬·이호웅·조배숙·강신성일·김영진·김원웅·배기운·이연숙 의원 발의)	13
19. 2003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14
20. 2003년도에만기도래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14
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대한출연동의안	14
22.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	15
23.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과견연장동의안	15
24.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과견연장동의안	15

25.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	16
26.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7
27.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여성위원장 제출)	17
28.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8
29.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9
30. 關稅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9
32.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교육위원장 제출)	20
33. 特殊教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박창달 의원 대표발의)(박창달·강숙자·이해봉·이규택·이성현·김정숙·맹형규·윤경식·이재오·김무성·윤두환·김덕규·현경대·황우여·조정무·고홍길·전재희·임종석·정병국·현승일 의원 발의)	20
34.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외 21인 발의)	20
35.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장성민·황승민·김택기·김태홍·오세훈·김홍신·윤경식·권기술·박창달·정병국·서상섭·김성조·안상수·심재권·박양수·김화중·김형오·이원형·김원웅·이해봉·김용학·고홍길 의원 발의)	20
36.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0
37.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0
38. 大韓民國學術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0
39.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정부 제출)	22
40.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2
41. 産業技術研究組舍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2
4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김형오·박상희·김영춘·강재섭·곽치영·권영세·김영선·김원웅·김진재·김희선·남궁석·박근혜·박진·박헌기·이상희·이종걸·허운나·조한천·이원성·김효석·윤한도·박원홍·윤영탁·엄호성·박주천·강창희·박세환·김기배·박주선·유홍수·정동영·전용원·최병렬·김문수·안정률·권대망·이부영·정형근·원희룡·김영환·김부겸·이재선·양정규·김무성·오세훈·권철현·권오을·김병호·김광원·정문화·박혁규 의원 발의)	22
43.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23
44.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정부 제출)	23
45. 腦研究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3
46. 科學館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3
47.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곽치영 의원 대표발의)(곽치영·임채정·김영배·정동영·김근태·유재건·김효석·최용규·이종걸·신기남·최선영·박용호·정범구·허운나·장영달·조성준·문희상·김성순·이정일·임종석·박상희 의원 발의)	24
48.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곽치영 의원 대표발의)(곽치영·강재섭·권영세·김근태·김상현·김영춘·김영환·김원기·김형오·김희선·남궁석·박근혜·박상희·박헌기·박진·이상수·이종걸·임종석·조배숙·조한천·허운나 의원 발의)	25
49.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5
50.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5
51. 電氣通信基本法中改正法律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26
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26
53. 放送法中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7
54. 地方文化院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7
55.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27
57.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8
58. 特許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8

59.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8
60. 意匠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8
61. 商標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8
62. 辨理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9
63.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64. 發明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9
65. 韓國電力公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66. 海底鑛物資源開發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67.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68. 地域信用保證財團法中改正法律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박상규·신현대·강인섭·김방림·이재선·백승홍·김태홍·손희정·김택기·황승민·이근진·조성준·임인배·안영근·강성구·정철기·김홍일·김화중·남궁석·김충조·설훈·강운태·김원길·조한천·박종우·김성순·김영배·김희선·천용택·정동채·박주선·김덕규·유재규 의원 외 18인 발의)	30
69.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3
70. 農漁村등保健醫療를 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3
71.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3
72. 藥事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김홍신·최영희·정범구·심재권·권기술·서상섭·김원웅·신기남·문희상·오세훈·정병국·김원기·안영근·김근태·김성순·김명섭·김태홍·박시균·손희정·이재정 의원 발의)	33
73. 母子福祉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7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김방림·김태홍·배기선·김홍신·최선영·김근태·유재건·박양수·심재권·이재정·조재환·이정일·김원웅·김옥두·배기운·강성구·이훈평·임채정·신기남·김윤식·이창복·김명섭 의원 발의)	34
75. 結核豫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4
76.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5
77. 醫療法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섭·김상현·김성순·김찬우·김홍신·남경필·박시균·심재철·이재선·이원형·김방림·김태홍·민봉기·배기선·배기운·손희정·유재건·이재정·이훈평·조정무 의원 발의)	35
78. 水道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6
79.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36
80.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 관한청원(최병렬 의원의 소개로 제출)	37
81.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16건)(각 소관 상임위원장(情報委員會 제외)제출)	37
82. 2003년도예산안	38
83. 2003년도가금운용계획안	38
84.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동의안	40
56. 산지관리법안(정부 제출)	40
○ 의사진행의견	42

(14시42분 개의) 다.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본회의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도중에 유예된 데 대해서 국민 앞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

지 않을 수 없고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이 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끝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정기국회에 산적되어 있는 안건들을 처리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도 국민에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끝까지 의석을 지켜서 의사일정 모두가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도 법률안 70건 등 모두 84건에 해당됩니다. 이 많은 법안의 통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졸속심의 우려라는 보도를 연일 하고 있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소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해 옴으로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들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법안 심의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軍人年金法中改正法律案(代案)(국방위원장 제출)(계속)
2. 濕地保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3.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4.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14시4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1항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어제 沈在哲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관계 위원회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오늘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 왔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 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시48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5항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徐秉洙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徐秉洙 환경노동위원회 徐秉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둘째, 유해 위험 기구나 방호장치, 그리고 보호구에 대해서 검정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앞으로 일정기간마다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셋째, 안전관리자 미선임,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등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2002년 11월 1일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이 산재다발 사업장이나 산재은폐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 그리고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둘째,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산재 재발 방지 및 예방조치에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일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둘째,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대기기간을 7일로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토록 하였고 셋째,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만 조기채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일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李浩雄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발의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고용관리책임자 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시 고용관리책임자를 함께 신고토록 하여 고용관리책임자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둘째,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일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령자나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둘째,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대상기관을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출자 및 위탁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환경노동위원회)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

建設勤勞者の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案(代案)
高齡者雇傭促進法中改正法律案(代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4건 부록으로 보 존 함)

○議長 朴寬用 徐秉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자고용촉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都市開發法中改正法律案(설송웅 의원 대표 발의)(설송웅·심규섭·김민석·김윤식·이희규·이강래·정동영·송훈석·박용호·조한천·고진부·김덕배·박주선·유재규·장태완·장재식·이인제·김홍일·설훈·송영진·김화중·이근진·안동선·유용태·이재창·백승홍 의원 발의)
(14시55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9항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俵松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長代理 俵松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俵松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법률안은 2001년 11월 9일 俵松雄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법안으로서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도시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지 조성 등 단일목적에서 벗어나 주택·산업·유통기능 등이 갖추어진 균형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민간의 도시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개발구역의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그 이하의 규모는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가정책 수행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제안하는 경우에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둘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방법으로 대규모인 경우는 공청회와 공람을 병행 실시하고 소규모의 경우에는 공람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구역지정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나 구역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역이 해제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구역면적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5년 이내에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2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정비와 아울러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들이 지자체의 시행을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환지방식 참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都市開發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僂松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정부 제출)

11. 骨材採取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시5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0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安昶律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長代理 安昶律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安昶律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정안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10년이라는 기간은 다양한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시행방식 및 시공사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사업시행을 조합 단독시행 또는 시장·군수·공법인 등과의 공동시행방식으로 변경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건축사업에서도 매도청구제도를 신설하여 일부 부대·복지시설이 철거되어 대지만 남은 경우에도 매도청구를 인정하고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허용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의 반대에 따른 재건축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에 환경규제의 강화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골재의 채취가 어려워짐에 따라 골재의 집중개발을 통한 골재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단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골재를 채취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둘째,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되, 이미 협의된 골재채취단지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채취를 허가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보고서
骨材採取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安奘律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賃貸住宅法中改正法律案(代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3.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홍일 의원 대표발의)(김홍일 의원 외 25인 발의)

(15시0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2항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金德培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長代理 金德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金德培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들 2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11월 29일 金弘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14일 元喜龍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한 결과 의결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민간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하여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임대주택 매매계약서에 임대주택의 매입자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현행 법령하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임차인에 대한 입주 후 분양 전환 시점까지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제도적으로 보증하도록 하였으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제한물권 설정을 제한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01년 12월 7일 金弘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경여부를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감면조항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일원화하여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감면조항을 이 법에서 규정할 경우 이 법과 개별법이 중복하여 감면조항을 두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현행법상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사업인가연도

의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7월 1일자로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시시점지가는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넷째,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결손처분조항을 신설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賃貸住宅法中改正法律案(代案)

(건설교통위원장)

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金德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대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신현대·정병국·오세훈·김형오·이주영·장성원·조정무·황우여·이해봉·박종근·김학송·안경률·김병호·도종이·윤두환·현승일·정의화·이한구·이승철·이원형·박

혁규·안영근 의원 발의)

15. 法律第3782號河川法中改正法律附則第2條의規定에의한補償請求權의消滅時效가만료된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강인섭 의원 대표발의)(강인섭·신기남·신현대·이근진·김희선·박주선·박인상·박희태·강창성·장영달·정동영·정동채·정세균·이강두·박상규·권기술·배기운·김성순·안상수·신경식 의원 발의)

16. 河川法中改正法律案(강인섭 의원 대표발의)(강인섭·신기남·신현대·이근진·김희선·박주선·박인상·박희태·강창성·장영달·정동영·정동채·정세균·이강두·박상규·권기술·배기운·김성순·안상수·신경식 의원 발의)

(15시1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4항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15항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3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長代理 安商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安商守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하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2년 10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자격자의 부실시공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폐지에 따라 무등록자의 불법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는 세금납부 및 기술자, 사무실 등의 유지비용 때문에 자진 폐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보일러 설치 시공을 무등록자가 함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

한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주요골자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개정안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되며, 건교부장관은 표시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 등록 없이도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일부 분야에 대해서까지 표시제한을 하게 되어 합법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개·보수 인테리어 업자 등 무등록자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등록된 건설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일부 전문업종 7개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표시적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표시금지를 일부 전문공사로 제한할 경우 강제철거조치는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7월 30일 姜仁燮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 및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증 및 토지대장상 기재 등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소유자 입증이 어려워 법 집행상의 혼란이 우려되다 는 지적이 있어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정기간 동안의 제외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인정하고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개인의 사유토지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결과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상에서 말씀드린 입법취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명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 7월 30일 姜仁燮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

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이 제외지에 의한 소급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취지임에 따라 모법인 하천법에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法律제3782號河川法中改正法律附則第2條의規定에 의한報償請求權의消滅時效가만료된河川區域編入土地報償에관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河川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본 법률 중에서 가장 긴 명칭의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女性發展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여성위
원장 제출)

18.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中
改正法律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정
철기·임채정·송훈석·이재정·박양수·정범구·
이창복·김정숙·권철현·정병국·전갑길·이종
걸·허은나·장영달·김태홍·김희선·김화중·정
세균·임종석·김경천·송석찬·이호웅·조배숙·
강신성일·김영진·김원웅·배기운·이연숙 의
원 발의)

(15시18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7항 여성발전기본법
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일제하일본군위
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 林鎮出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委員長 林鎮出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성위원회 위원장 林鎮出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
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있어서 먼
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7일 李
嬾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
률안과 2001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여
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두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여
성정책이 여성부뿐만 아니라 각 행정부처에서도
시행됨에 따라 동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정책책임관을 지
정 운영하도록 하며 소관정책의 수립·집행과정
에서 여성의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
가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
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소관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성인지
적 관점에 입각하여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
록 하고 둘째,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계되는
여성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정책과 관련한 장관들로 구
성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도록 하였으며 셋
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
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여성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들로 구성된 실
무회의가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보좌하도록 하였습
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여성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 및 남녀평등의 증진을 위한 교육기능에 대
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
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12월 31일 李美卿 의원을
비롯한 29인이 발의한 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
정지원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본군위안부
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
전시 및 기념사업 등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
써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
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진실규명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
·연구·보존·전시·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등을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
도록 하며 셋째,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
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함
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을 강화하도
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
업 등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법인 또는 단

체에 대한 예산지원관련규정을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일본군 위안부 관련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도 거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여성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 조)

女性發展基本法中改正法律案(代案)

(여성위원장)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 대한生活安定支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여성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林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본법을 통과하는데 여성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개정법률안을 여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3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20. 2003년도에만기도래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대한출연동의안

(15시25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9항 2003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03년도에만기도래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국제부흥개발은행의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대한출연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晁植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金晁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경기 하남 출신 한나라당 金晁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03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비료계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3년도에 만기도래하는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 37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동액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다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보증동의안에 대하여 향후 정부가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매년 일정액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03년도에만기도래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IMF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중 2003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부흥개발은행의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대한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설치

되어 있는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 아시아 개도 국가의 환경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함에 있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설치된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 대한 출연연도를 2002년도로 명시하도록 동의안 명칭을 수정하였고, 둘째, 출연재원의 출처를 2002년도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2003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에만기도래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제부흥개발은행의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대한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金晁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비료계정의한국은행차입금원리금상환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만기도래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차환을위하여발행하는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부흥개발은행의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대한출연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

23. 국군부대의 「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 파견연장동의안

24. 국군의료부대의 「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 파견연장동의안

(15시30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2항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파견연장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파견연장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李昌馥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外交通商委員長代理 李昌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李昌馥 의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파견연장동의안,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파견연장동의안, 이 3건의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비준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난 10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1월 5일 제234회 정기국회 제8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비준동의안은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인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의 헌법상 상충여부, 실효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건의 국군부대 파견연장동의안은 각각 지난 10월 28일 제출되어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후 11월 5일 제234회 정기국회 제8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파견연장동의안은 1999년 10월부터 동티모르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파견연장동의안은 1994년 9월부터 서부사하라에 파견되어 있는 의료부대의 파견기간을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UN회원국으로서 UN의 국제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 심사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비준동의안 심사 보고서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 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파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SET)」 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의료부대의「유엔서부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

(15시35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5항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朴洋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代理 朴洋洙 국방위원회의 朴洋洙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4건의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중개정법률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그런데 3건은 어제 의결해 주시고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沈在哲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어제 유감스럽게도 의결을 못 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의결을 해 주셔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국방위원회에서 또 하나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12월부터 대테러전쟁을 위해서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파견기간을 2003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UN 회원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활동을 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과 테러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떠한 유형의 테러도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파병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만일 한국 국군의 철수 시 한미 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한미 동맹관계 강화 및 국익증진을 위해서 최초 파병 시와 같은 맥락에서 파견기간연장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

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朴洋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군부대의대테러전쟁과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자 말씀처럼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5시38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6항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曹雄奎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外交通商委員長代理 曹雄奎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曹雄奎 의원입니다.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2년 11월 5일 제8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회는 오는 2003년이 우리 한인들의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임을 주목하여 그동안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미국사회에 훌륭하게 정착하여 각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재미 한인동포 사회의 발전을 축하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재미 한인동포사회가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단계로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을 기원하는 뜻에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2003년을 한인의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선포하게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의 선조 102명이 미국 상선 갤릭(S. S. Gaelic)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식 이민으로서 이것이 오늘날 200만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재미 한인동포사회의 초석이 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인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미국 사회 내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현지사회에 접목시켜 계승·발전시키고 미국사회 각계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해왔음을 재확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재미 한인동포사회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하였고 또한 1997년에 조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에는 외화를 송금하는 등 역사적으로 조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

4.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한인의 미국이민 100주년에 즈음하여 이를 축하함과 아울러 재미 동포사회의 끝없는 발전을 염원하는 뜻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2003년을 한인의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결의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미국의 상하 양원은 2003년을 한국이민의 해로 결정해서 기념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회에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한인의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

(여성위원장 제출)

(15시4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7항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위원회 全在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委員長代理 全在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위원회 소속 全在姬 의원입니다.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2년 10월 24일 제4차 여성위원회에서 발의되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인력 활용 등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내에 여성정책의 전담부처로 여성부가 신설되고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여성정책의 집행은 예산부족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성평등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안 편성내역 및 시정연설 등의 전반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러한 성평등적 관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예산이 여성부 외에도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각 부처의 여성관련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의안은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작성단계에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르기까지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각 부처의 여성관련예산을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예산안편성에 있어서 성평등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있어서 여성관련예산의 편성방침 및 내용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여성관련예산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각 행정부처는 여성관련예산의 현황 및 편성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全在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案(정부 제출)

(15시4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8항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會運營委員長代理 林仁培 국회운영위원회 林仁培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며, 셋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범위를 확대하며 사업관련 정보의 제공과 기타 사업추진절차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어 안 제4조제4호에서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이 법의 체

계상 기존의 원칙적 방식에 대한 예외적인 추진 방식에 해당되므로 그 취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고, 둘째 안 제7조에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은 현행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장기민간투자계획의 수립근거를 별도로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이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안 제60조에서는 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규정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책임감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약간의 체계·자구를 정리한 부분과 이 법안의 심사경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국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0. 關稅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4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9항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金政夫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金政夫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마산 합포 출신 金政夫 의원입니다.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세분야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함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국세행정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향후 종전 규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한편 허가 없이 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세무사가 비상근이사·비상근감사와 학원·학교의 출강 등 일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를 완화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세무사가 법인의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업무 등 세무대리 중인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무대리 중인 법인은 대부분 경제적 부담으로 상근임원을 두기 곤란한 소규모 법인이며 현재 국세청 훈령으로도 비상근이사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비상근이사의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겸직허용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관세분야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관세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함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관세행정경력 일반직공무원에게 향후 종전규정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세사자격을 자동부여하고 둘째, 통관신고 관련 절차의 이행, 환급청구업무의 대리 등을 관세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하여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셋째, 관세사자격의 명의대여유사행위금지, 관세사의 겸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한 관세사의 겸업허용 대상 영리업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關稅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중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 마는 뒤로 미루고 제32항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32.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교육위원장 제출)

33. 特殊教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박창달 의원 대표발의)(박창달·강숙자·이해봉·이규택·이성현·김정숙·맹형규·윤경식·이재오·김무성·윤두환·김덕규·현경대·황우여·조정무·고홍길·전재희·임종석·정병국·현승일 의원 발의)

34. 學校用地確保에 관한 特例法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외 21인 발의)

35.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현승일·장성민·황승민·김택기·김태홍·오세훈·김홍신·윤경식·권기술·박창달·정병국·서상섭·김성조·안상수·심재권·박양수·김화중·김형오·이원형·김원웅·이해봉·김용학·고홍길 의원 발의)

36. 大韓敎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7.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8. 大韓民國學術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5시56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2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폐교재산의 활용추진을 위한 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玄勝一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委員長代理 玄勝一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玄勝一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寬用 의장, 金台植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曹雄奎 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결과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둘째,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실효성을 상실한 대학의 부학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학교를 포함한 모든 각급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편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한편 개정안의 시행시기도 공포한 날에서 2004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법을 추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거주해 온 기존 거주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개발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법 외에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개발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새로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자들에 대한 법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 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폐교재산이 교육용 시설 등 일부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 책무가 더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도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도록 이를 추가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현행 2년인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결산보고 기간을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서 3개월 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정하였고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교육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

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안한 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대한민국학술원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으나 명예회원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등은 총회에서 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명예회원의 위상정립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정하였고 그밖에 부칙에서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

(교육위원장)

特殊教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學校用地確保에 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 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大韓教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大韓民國學術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교육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玄勝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학술원법중개정법률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정부 제출)

40.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1. 産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김형오 의원 대표 발의)(김형오·박상희·김영춘·강재섭·곽치영·권영세·김영선·김원웅·김진제·김희선·남궁석·박근혜·박진·박현기·이상희·이종걸·허운나·조한천·이원성·김효석·윤한도·박원홍·윤영탁·엄호성·박주천·강창희·박세환·김기배·박주선·유홍수·정동영·전용원·최병렬·김문수·안정률·권태망·이부영·정형근·원희룡·김영환·김부겸·이재선·양정규·김무성·오세훈·권철현·권오을·김병호·김광원·정문화·박혁규 의원 발의)

(16시05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의사일정 제40항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金榮春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代理 金榮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金榮春 의원입니다.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이유는 21세기 신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구상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개념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나노기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작성하여 핵심개발 대상기술을 도출하도록 하며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나노기술 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노기술 실용화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군겸용기술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동 법안은 주관연구기관의 자료요청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매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조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金炯昨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발전은 국가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을 육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불안정, 처우 및 복지수준의 미비, 연구예산의 감축 등으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연구활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국가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한 과학기술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 각종 복리후생 시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제회 조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民·軍兼用機術事業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産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 심사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金台植 金榮春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정부 제출)

44.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정부 제출)

45. 腦研究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6. 科學館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6시11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43항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의사일정 제45항 뇌연구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과학관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朴振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代理 朴振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朴振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안,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뇌연구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과학관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활용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여성과학인력을 적극 양성·활용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의 취지에 맞게 여성과학기술인의 사회적·성적

평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로 목적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목표비율 설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추진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설치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상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한하도록 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성장 가능성이 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계획 중 소관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도록 하여 계획의 수립주체와 추진주체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방사선 등 관련 기초연구의 지원규정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방사선 등 연구기반 확충 지원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등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등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뇌연구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뇌연구촉진심의회 위원장의 직급을 종래 과학기술부장관에서 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향조정하고 심의회 구성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종래 학계 6인, 연구기관 3인, 산업계 2인이 포함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관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과학관의 등록 및 사립과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심사보고서

腦研究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科學館育成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朴振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뇌연구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관육성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곽치영

의원 대표발의)(곽치영·임채정·김영배·정동영·김근태·유재건·김효석·최용규·이종걸·신기남·최선영·박용호·정범구·허운나·장영달·조성준·문희상·김성순·이정일·임종석·박상

회 의원 발의)

- 48.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곽치영 의원 대표발의)(곽치영·강재섭·권영세·김근태·김상현·김영춘·김영환·김원기·김형오·김희선·남궁석·박근혜·박상희·박헌기·박진·이상수·이종걸·임종석·조배숙·조한천·허운나 의원 발의)

49.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0.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6시17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47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정보격차 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權寧世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代理 權寧世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 을 출신 權寧世 의원입니다.

郭治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현행 규정상 개념인 “정보보호전문업체”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 법에서 부여하고자 하는 업무나 기능에 맞게 이를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개념을 명확히 지칭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련 업계의 오해와 혼란요인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국민이 지역적 여건에 구해 받지 않고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의 강구에 관한 규정은 현행 제3조의 규정과 상충되므로 정보격차실태의 조사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전기통신역무의 타인사용제한 제도와 불온통신의 단속규정을 정비하는 등 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고자 정부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통신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만을 부과하도록 완화하고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업자의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전기통신기 본법에 반영되어야 할 개정내용인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 수행과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전기통신기본법을 개정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화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적정을 기하고 온라인상에서의 프로그램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 배타적 전송권을 설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金台植 權寧世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電氣通信基本法中改正法律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제출)

(16시23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51항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朴相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代理 朴相熙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朴相熙 의원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崔秉烈 의원, 金榮春 의원, 李鍾杰 의원, 尹景湜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회부된 4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체토론과 공청회 그리고 법률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4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에서는 종전의 전자우편과 더불어 전화, 모사전송 등에 의한 영리성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신거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와 연락처 자동 생성을 통한 광고 전송행위를 금지하는 등 악성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신위원회의 규제기능 수행에 관한 법적근거 설정 및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의 자체 개정을 통하여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완하여 사후규제 및 집행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電氣通信基本法中改正法律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朴相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放送法中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54. 地方文化院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5.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6시26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53항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지방문화원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高興吉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委員長代理 高興吉** 문화관광위원회 高興吉 의원입니다.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방문화원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高珍富, 曹雄奎, 沈載權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법 제8조 소유제한 등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는 용어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용어를 정리하였고, 개인 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변경 허가규정을 보완하고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하던 지방문화원에 대한 설립인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李美卿, 沈揆喆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절취, 도굴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 취득하여 은닉한 경우와 절취·도굴 범죄자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은닉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放送法中改正法律案(代案)

(문화관광위원장)

地方文化院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문화관광위원회)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문화관광위원장)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金台植** 高興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부록으로 보존함)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산지관리법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안전처리를 위해서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57항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6시32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57항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李仁基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李仁基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농어업인의 부채문제는 유예되었으나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입금에 의존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우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에는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과중한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이러한 농어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기정책자금의 이율을 3%로 하고 연대보증피해에 대한 특별자금의 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며 부채의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농림해양수산위원장)

○副議長 金台植 李仁基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特許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9.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0. 意匠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1. 商標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6시33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58항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상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委員長代理 金泰弘 존경하는 金台植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金泰弘 의원입니다.

특허법중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의장법중개정법률안, 상표법중개정법률안 등 정부에서 제출한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4건의 법률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일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관련권리가 소멸되거나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장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기간 내에 부족한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관련권리나 출원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 현재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30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20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제예비심사청구의 여부와 관계없이 30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여 최근에 개정된 특허협력조약의 내용과 일치시켰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특허권 등의 소멸방지를 위하여 특허법의 특허료의 보전, 실용신안법의 등록료의 보전, 의장법의 등록료의 보전 그리고 상표법의 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허협력조약과 일체시키기 위하여 국제출원의 번역문 관련조항인 특허법 제201조, 실용신안법 제59조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허법중개정법률안 등 이 4건의 법률안에 특허청장이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던 보정명령 또는 보전명령을 의무규정으로 수령하여 출연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표현과 자구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特許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意匠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商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金台植 金泰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허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

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 辨理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3.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4. 發明振興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6시38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62항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4항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金晟祚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委員長代理 金晟祚 산업자원위원회 金晟祚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은 2002년 2월 21일에,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과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2002년 10월 29일에 각각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허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정 당시의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자의 범위에 개정 당시의 6급 이하의 특허청 소속공무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5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급 이상

의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된 변리사법의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청에서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변리사자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동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사회의 심화에 따른 특허 관련 행정수요의 증대와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요청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는 동시에 세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요청의 증가에 따라 그 소요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의 범위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을 추가하고 둘째, 특허기술 등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의 범위에 우수발명의 이전알선 등 발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용자를 추가하며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아니 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동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이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식경제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발명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기법연구사업에 대한 지원 등 발명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 개발과 여성발명인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발명평가에 관한 기반확충을 위해 특허청장은 발명평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발명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행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제도정비 및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를 산업자원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동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주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辦理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發明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金晟祚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관리특별회계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명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韓國電力公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6. 海底鑛物資源開發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7.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8. 地域信用保證財團法中改正法律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배기운·박상규·신현대·강인섭·김방림·이재선·백승홍·김태홍·손희정·김택기·황승민·이근진·조성준·임인배·안영근·강성구·정철기·김홍일·김화중·남궁석·김충조·설훈·강운태·김원길·조한천·박종우·김성순·김영배·김희선·천용택·정동채·박주선·김덕규·유재규 의원 외 18인 발의)

(16시44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65항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裴奇雲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委員長代理 裴奇雲 산업자원위원회의裴奇雲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지난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11월 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 수의 5할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부에서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은 국내 대륙붕의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저조광권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저조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금력과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해저조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산업입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공업배치에서 지역별 산업의 집적과 연계 등을 위한 산업집적의 활성화로 전환하고 정보화기반 확충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집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의 부칙조항 중 산업발전법의 실제적 내용을 수정한 것은 부칙에 의한 타법 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34인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의 확충을 위해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기능을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보증체계를 개편하고, 둘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첫째 금융기관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둘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재보증업무 등 공적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법정단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관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韓國電力公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海底鑛物資源開發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地域信用保證財團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산업자원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裴寄雲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裴寄雲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해야 할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권유해 올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데 숫자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편의상 회의를 순조롭게 진행시켜야 할 책무도 있습니다만 좌우 측에 보시는 언론인들이 지금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 본회의의 절차는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체 토론하고 또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지고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의 처리안건이 한꺼번에 수십 건이 와 가지고 제안설명, 심사보고만 듣고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일부 생각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본회의가 처리하는 이 안건이 결코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소위원회 활동, 공청회 등 모든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집약해서 토론한 결과를 처리하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어차피 오늘 양당 교섭단체 간에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11월 8일 기한으로 2003년도 정부 예산 안까지를 포함해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건 중에는 찬반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각 당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어차피 성원을 시키고 표결에 대비해서 준비까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독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忠兆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제안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지요.)

○副議長 金台植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빨리 끝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국회법의 정신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金台植 부의장, 朴寬用 의장과 사회교대)

○議長 朴寬用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개정법률안을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0. 農漁村等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1.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2. 藥事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김홍신·최영희·정범구·심재권·권기술·서상섭·김원웅·신기남·문희상·오세훈·정병국·김원기·안영근·김근태·김성순·김명섭·김태홍·박시균·손희정·이재정 의원 발의)
(17시15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69항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0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2항 약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李源炯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委員長代理 李源炯 보건복지위원회 李源炯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의결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대금 직접지불제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과잉 규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지역 및 배치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절차 및 복무관련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보건의료정책 수행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도 공중보

건의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시설을 확대하였고 둘째,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여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명령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중보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수행할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적정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배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확대 강화하여 불법 마약류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고 둘째, 한 의사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 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와 같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였으며 셋째, 최근 날부핀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난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마약에만 한정되어 있는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하도록 하였고 넷째,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발암물질 등 인체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방역소독제제의 경우 관련 법률의 미비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약사법의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제제의 제조업소가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소의 시설기준 등을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에서 1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대안)
農漁村等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

案(代案)

-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보건복지위원장)
- 藥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보건복지위원회)
-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17시20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4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崔榮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保健福祉委員長代理 崔榮熙 보건복지위원회 崔榮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2년 8월 7일 金洪信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안의 대안으로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행 모자복지법이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등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2년 5월 17일 金聖順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원안 의결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상의 제반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동모금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모금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과실행위원회를 세분하고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등을 모금회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모금회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고 배분하고 남은 재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이 10여 안건만 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좀 지켜 주시고 정기국회만 되면 정부가 법안을 쏟아 내는 관례를 고치는 국회법 개정안 작업을 곧 착수할 테니까 이런 지루한 시간은 금년으로 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2002년 9월 18일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수정 의결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결핵 유행률과 사망률이 크게

- 73. 母子福祉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7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김방림·김태홍·배기선·김홍신·최선영·김근태·유재건·박양수·심재권·이재정·조재환·이정일·김원웅·김옥두·배기운·강성구·이훈평·임채정·신기남·김윤식·이창복·김명섭 의원 발의)
- 75. 結核豫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낮아졌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결핵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를 현행 출생 후 1년 미만인 유아에서 출생 후 1월 미만인 유아로 앞당기고 비밀누설에 대한 벌칙을 다른 법률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결핵 예방접종 및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상의 권한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예방접종에 수반되는 경비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母子福祉法中改正法律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結核豫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자복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핵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77. 醫療法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
(김명섭·김상현·김성순·김찬우·김홍신·남경

필·박시균·심재철·이재선·이원형·김방림·김태홍·민봉기·배기선·배기운·손희정·유재건·이재정·이훈평·조정무 의원 발의)

(17시24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7항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委員長代理 金洪信 보건복지위원회 金洪信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원안 의결한 의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대금을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대금 직접지불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규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였고 둘째, 요양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보험료액 중 학교경영자가 부담분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안 의결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마사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안마시술의 편의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안마시술소와 구분되는 소규모·소자본의 안마원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

(보건복지위원장)

醫療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보건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金洪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水道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79.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시2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78항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9항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朴赫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勞動委員長代理 朴赫圭 경기도 광주 출신 朴赫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 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2000년 7월 18일 鄭東泳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

법률안, 2001년 8월 13일 朴憲基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0월 10일 宋勳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11월 12일 申溪輪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고 동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 등 수도시설 설치비용 등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수도시설 및 노후수도시설의 개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제 234회국회(정기회) 1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金樂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과 2001년 11월 12일 申溪輪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조정위원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재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명, 재정의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의 경우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조정절차는 당해 사건의 소관 행정청의 소속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水道法中改正法律案(代案)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代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최병렬 의원의 소개로 제출)

(17시3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80항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金聖順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委員長代理 金聖順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金聖順 의원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2002년 1월 18일 崔秉烈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의 근거규정을 두고 대통령령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안전교육을 권장사항으로 분류해 놓는 등 사실상 어린이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린이 안전교육의 의무화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서 이미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장의 안전교육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실시내용과 방법 등을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9조를 존중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의견을 부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제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을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金聖順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의 본회의 심사보고 채택은 16대 국회에 와서 처음 있는 일로 청원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16건)(각 소관 상임위원장(情報委員會 제외)제출)

(17시35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81항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16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해 온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

물에 소상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16건)을 각각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이송해서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82. 2003년도예산안

8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7시36분)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82항 2003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8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權琪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權琪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10월 1일과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30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월 2일까지 부별심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11월 4일부터 5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각 교섭단체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1월 8일 제5차 조정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불

여서 만장일치로 동 소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고 당일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한 다음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당 위원회는 국회법 제84조 제5항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소관상임위원회가 순삭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증액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검토하며 순증액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이번 심사일정이 매우 촉박하였던 관계로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협의일정이 불가피하게 단축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의결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1조 6580억 원에서 1749억 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당초 71조 3853억 원에서 69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삭감규모는 2439억 원입니다. 기금은 당초 총계규모 159조 7879억 원에서 358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등 1396억 원, 한은 잉여금 500억 원 등 총 1996억 원이 감액되고 정부 출자수입 등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라 247억 원이 증액되어 1749억 원이 순삭감되었으며 세출은 5524억 원이 삭감되고 3870억 원이 증액되어 1654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22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양여세 등326억 원과 교통고발신고보상금제도 폐지에 따른 과태료 746억 원 등 총 1308억 원이 감액되었고 무인장비과태료 563억 원 등 618억 원이 증액되어 690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은 6777억 원이 삭감되고 6233억 원이 증액되어 544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7개 기금의 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

금 국·공채수입 등 4552억 원이 삭감되고 정보화
촉진기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 963억 원이 증액
되어 3589억 원이 순삭감되었으며 지출은 6482억
원이 삭감되고 3724억 원이 증액되어 2758억 원
이 순삭감되었습니다.

예산총칙에서는 제9조 국채발행한도액과 관련
해서 국민주택기금은 당초 9조 원에서 5000억 원
이 감액된 8조 500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은 당초 33조 원에서 1000억 원이 감액된 32조
900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13조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등은 1조 8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감액된 1조 6000억 원으로 목적예비비를 수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 및 기
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
견을 첨부했습니다.

“국회는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2002년 이내에 수해지구에 3000억 원을 지원하
되 예비비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으로 각각 50%
씩 분담하여 지원 완료한다.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을 위
해 국민체육진흥기금 271억 원 외에 체육복권 증
량 발행을 통해 100억 원을 추가지원한다.

전남도청 이전에 앞서 광주도심권공동화방지대
책을 수립·시행한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부가 신설되었음에도 재원이 부족해 흡족한
반영을 하지 못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
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03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權琪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2003년도 예산안 심사 중 증액
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
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정
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張丞玠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
에서 정부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
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議長 朴寬用 기획예산처장관,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
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에 담긴 국회의 정책의지뿐
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그동안 지적해 온 기금의 방만
성 문제가 앞으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각
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부장관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안건 하나가 표결할 것이 있
으니까 전부 자리를 뜨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財政經濟部長官 田允喆 존경하는 朴
寬用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선 정부를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
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洪在馨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로와 경
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훼손된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면서 한편에서는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지가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나가고 또는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제안과 충고의 말씀 역시 재정 운영과 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온 국민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결집하여 새로운 도약과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84.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정부 제출)

(17시4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84항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申鉉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資源委員長代理 申鉉泰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수원 출신 申鉉泰 의원입니다.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 수요전망을 감안하여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2002년도와 동일한 59조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59조 원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2003년도 계약체결한도는 2002년도의 8조 2000억 원보다 5000억 원 증액된 8조 7000억 원으로 하며, 셋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5조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후에 소위원회 의 심사를 거친 다음 10월 24일 제7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안을 심의할 시간인데 수정안이 나와 있어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들이 몇 분 나가신 것 같으니까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 산지관리법안(정부 제출)

(17시51분)

○議長 朴寬用 이제 의결정족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6항 산지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姜成求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姜成求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姜成求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지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지의 관리제도

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현재 산림법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지의 관리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매수시 매수가격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하도록 명시하고 둘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시 복구비 예치면제대상자는 대집행복구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상계하고 환급토록 수정했으며 셋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전용용도를 변경한 것은 불법이므로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넷째, 현재 산림조합이 대부분의 산림형질변경지를 복구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을 복구전문기관으로 예시하고 복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산지관리법안 심사보고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鄭柄國 의원, 朴赫圭 의원의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鄭柄國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柄國 議員 한나라당 경기 가평·양평 출신 鄭柄國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그동안 팔당 상수원지역을 비롯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수계법 및 수도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 등 무려 11개 법률에 의해서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로 지역주민들을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 지역경제활동만 위축시

킬 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질개선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상수원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주민의 동참이 전제되어야 하며 환경기초시설의 완비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산지관리법안 제9조1항을 보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4호에서 수질보전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지정대상에 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팔당호, 금강, 낙동강, 영산강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는 시·군의 산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또 다시 포함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안 제9조1항제4호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산림청과 환경부 등 행정부에서도 합의해 준 산지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이 추운 날씨에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2000여 명이 이 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기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선배·동료의원들의 사려 깊은 생각에 의하여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산지관리법안에대한수정안
(鄭柄國·朴赫圭 의원 외 29인)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신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금 전에 鄭

柄國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모든 의원들은 투표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의 투표표시판에 있는 재석 버튼을 다같이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이라는 것을 다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44분이 재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鄭柄國·朴赫圭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4인 중 찬성 79인, 반대 56인, 기권 9인으로서 鄭柄國·朴赫圭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지관리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진행의견

(18시01분)

○議長 朴寬用 다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林鎭出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鎭出 議員 의원 여러분, 잠깐만 좀 듣고 가십시오. 뭐 그렇게 급합니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權琪述 간사께서 여성부 예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그 표시에 대해서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 200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통과에 張丞珩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이의

없습니다.”라고 당당히 답변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함과 아울러 매우 섭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여성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국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부가 출범하였고 금년에는 국회에 여성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신설되어 국회와 정부가 2003년도 여성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여성부 2003년도 예산규모는 435억 원으로 다른 부처의 1개 과 예산에도 못 미치는 지극히 적은 예산입니다.

여성부는 내년도 여성발전기금의 재정출연이 1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인력 양성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148억 원 규모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면서 여야 위원이 충분히 심층 검토한 결과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00억 원을 포함한 138억 원의 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청하였습시다라는 결과적으로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원금이 잠식되고 여성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예산반영이 시급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기획예산처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여성발전에 대한 인식도 심히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여성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오늘 국회에서 결의한 것과 같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성 평등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처가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여성부 예산을 1원도 증액을 인정치 않은 사실은 한국 여성사에 반드시 기명으로 기록될 것이며 전국의 여성단체는 물론 본 의원의 자서전에까지 기록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朴寬用 오늘로서 234회 정기국회의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 상임위원회 위

원님들,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이 정기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훈 삼아야 할만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국정감사를 못 하는 위원회도 있었고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되는 국회법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의원 여러분 각자도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해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보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차 본회의는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

(참 조)

【결의안】

성인지적예산편성및자료제출촉구결의안

제안년월일 : 2002. 11.

제 안 자 : 여성위원장

주 문

여성과 남성은 삶의 경험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므로 이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인지적 접근이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는바,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운용을 위하여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부와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성관련예산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심의단계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은 물론 관련부처 간의 여성관련예산에 대한 자료협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 및 집행과 부처 간 협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 및 예산안편성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있어서 여성관련예산의 편성기준 및 내역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여성관련예산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각 행정부처는 여성관련예산의 현황 및 편성내역 등을 여성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인력 활용 등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내에 여성정책의 전담부처로 여성부가 신설되고 5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여성정책의 집행은 예산부족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안 편성내역 및 시정연설 등의 전반적인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예산이 여성부 외에도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각 부처의 여성관련예산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로부터 관련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 결의안은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 작성단계에서부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르기까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각 부처의 여성관련예산을 여성부와 국회 여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한인미국이민100주년을기념하는결의안

제안년월일 : 2002. 11. 5.

제 안 자 :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오는 2003년이 우리 선조들의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을 주목하여 이를 축하하고, 재미 한인동포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현재 200만 이상의 인구로 성장한 가운데 미국 사회 각계에서 다

양한 공헌을 하여 왔고, 또한 한미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미 한인동포사회가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단계로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을 기원하는 뜻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국회는 우리의 선조 102명이 미국 상선 갤릭(S. S. Gaelic)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나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식 이민으로서, 이것이 오늘날 200만 이상의 규모로 성장한 재미 한인동포사회의 초석이 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자 한다.
2.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인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미국 사회내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현지사회에 접목시켜 계승·발전시키고, 미국 사회 각계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해 왔음을 재확인한다.
3. 대한민국국회는 재미 한인동포사회가 일제 식민통치하에서도 조국의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하였고, 또한 1997년에 조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에는 외화를 송금하는 등 역사적으로 조국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
4. 이에 대한민국국회는 역사적인 한인의 미국 이민 100주년에 즈음하여 이를 축하함과 아울러, 재미 동포사회의 끝없는 발전을 염원하는 뜻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2003년을 한인의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공식 이민단이 1902년 12월 22일 갤릭(S. S. Gaelic)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출발하여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을 시작으로 한 우리 한인들의 미국 이민사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미국 사회에 훌륭하게 정착하여 미국사회의 각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재미 한인동포사회의 발전을 축하함과 아울러, 초기 이민자

들의 독립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그 후예들로 하여금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조국애를 고취시켜 동포사회의 단합은 물론 우방국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2003년을 한인의 「미국이민 100주년 기념의 해」로 지정·선포하게 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임.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산지관리법안

투표의원(144人)

찬성의원(79人)

姜申星一	姜仁燮	姜在涉	高興吉
權琪述	權寧世	權泰望	金光元
金滿堤	金晟祚	金榮春	金容甲
金龍學	金龍煥	金政夫	金鍾河
金燦于	金洪信	金晃植	羅午淵
孟亨奎	閔鳳基	朴寬用	朴明煥
朴世煥	朴承國	朴是均	朴源弘
朴鍾根	朴鍾雄	朴柱千	朴振
朴憲基	朴赫圭	徐秉洙	徐相燮
徐廷和	徐淸源	孫希姪	辛卿植
申榮國	申鉉泰	沈揆喆	安炅律
安商守	安泳根	安澤秀	嚴虎聲
元喆喜	尹景湜	尹汝雋	李康斗
李敬在	李揆澤	李富榮	李相培
李祥羲	李完九	李龍三	李允盛
李海龜	林仁培	任太熙	田塔源
田溶鶴	鄭均桓	鄭柄國	鄭鎭碩
曹雄奎	曹正茂	崔燉雄	崔秉烈
河舜鳳	咸錫宰	玄敬大	玄勝一
洪思德	黃勝敏	黃祐呂	

반대의원(56人)

姜成求	姜雲太	高珍富	郭治榮
金敬天	金杞載	金淇春	金德圭
金德培	金明燮	金文洙	金秉浩
金相賢	金成鎬	金榮煥	金玉斗
金雲龍	金忠兆	金台植	金泰弘
金炯昨	金希宣	文喜相	朴炳潤
朴相千	朴相熙	朴洋洙	朴仁相
朴宗雨	朴柱宣	裴奇雲	宋永吉
宋勳錫	柳興洙	尹漢道	李康來

李佑宰 李仁基 李正一 李柱榮
 李協 李訓平 李張永 李張植
 全甲吉 鄭東泳 鄭文和 鄭哲基
 趙在煥 趙漢天 鄭容宅 崔炳國
 崔榮熙 崔在昇 許雲那 洪在馨

기권의원(9人)
 金樂冀 陸堯相 朴炳錫 李萬變
 李在昌 任鍾哲 林鎮出 全在姬
 鄭範九

尹榮卓 尹鐵相 尹漢道 李康斗
 李康來 李敬在 李揆澤 李根鎮
 李洛淵 李萬在 李方鎬 李秉錫
 李富榮 李相得 李相培 李相洙
 李祥羲 李良熙 李元昌 李完九
 李龍三 李佑宰 李仁基 李源炯
 李允盛 李允洙 李在昌 李仁濟
 李在善 李在五 李漢久 李正一
 李柱榮 李昌馥 李漢平 李海龜
 李海鳳 李協 李訓出 李熙圭
 林仁培 任鍾哲 張在植 張泰玩
 張誠源 張永達 田溶鶴 田溶和
 全甲吉 鄭東泳 鄭世均 鄭文澤
 鄭均桓 鄭柄國 鄭鎮碩 鄭哲基
 鄭義和 鄭長善 趙富英 曹雄奎
 鄭亨根 趙正茂 趙漢天 朱鎮吁
 趙在煥 曹正培 崔燉雄 崔明憲
 千容宅 崔秉烈 崔善榮 崔鉛熙
 崔炳國 崔在昇 秋美愛 河舜鳳
 崔榮熙 韓和甲 咸錫敬 咸承熙
 韓昇洙 許泰烈 玄敬大 玄勝一
 許雲那 洪在馨 洪準杓 黃勝敏
 洪思德 黃祐呂

○出席議員(233人)

姜三載 姜成求 姜淑子 姜中星一
 姜雲太 姜仁燮 姜在涉 姜昌成
 姜昌熙 高珍富 高興吉 郭治榮
 權琪述 高權寧世 高五乙 權哲賢
 權泰望 金敬天 金光元 金權泰
 金杞培 金杞載 金淇春 金德圭
 金德龍 金德培 金樂冀 金滿堤
 金明燮 金武星 金文洙 金芳林
 金秉浩 金富謙 金相賢 金聖順
 金晟祚 金成鎬 金映宣 金榮駟
 金泳鎮 金榮春 金榮煥 金玉斗
 金容甲 金容鈞 金龍學 金龍煥
 金雲龍 金元雄 金政夫 金鍾河
 金宗鎬 金鎮載 金燦于 金忠兆
 金台植 金泰弘 金鶴松 金學元
 金炯昨 金洪信 金晃植 金孝錫
 金希宣 羅午淵 南景弼 南宮哲
 都鍾伊 柳在乾 柳在珪 柳興洙
 孟亨奎 陸堯相 文錫鎬 文喜相
 閔鳳基 朴寬用 朴權惠 朴明煥
 朴炳錫 朴炳潤 朴相千 朴相熙
 朴世煥 朴承國 朴是均 朴洋洙
 朴源弘 朴仁相 朴鍾根 朴宗雨
 朴鍾雄 朴柱宣 朴柱千 朴振
 朴昌達 朴憲基 朴赫圭 朴燻太
 裴基善 裴奇雲 白承弘 徐秉洙
 徐相燮 徐廷和 徐清源 徐松雄
 薛勳 孫希姪 宋光浩 宋錫贊
 宋永吉 宋榮珍 宋勳錫 辛卿植
 申榮國 申安律 沈安揆 沈載權
 沈在哲 安安泳 安澤秀 安正圭
 嚴虎聲 吳世勳 安元裕 元喆喜
 元喜龍 劉容泰 尹景混 尹汝雋

○出張議員(5人)

金東旭 李性憲 李承哲 李鍾杰
 趙培淑

○請暇議員(22人)

康奉均 金允式 金一潤 金貞淑
 金鍾泌 金宅起 金弘一 朴尙奎
 朴鍾熙 申溪輪 吳長燮 尹斗煥
 李美卿 李源性 李在禎 李漢東
 李海瓚 李浩雄 林采正 鄭昌和
 趙誠俊 曹喜旭

○出席國務委員

부제 총리 장관 田 允 喆
 부총리 부장관 李 相 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丁 世 鉉
 통일부장관 崔 世 泓
 외교통상부장관 李 俊 植
 국방부장관 李 根 福
 행정자치부장관 李 永 福
 과학기술부장관

농림부장관	金 東 泰
정보통신부장관	李 相 哲
보건복지부장관	金 成 豪
환경부장관	金 明 子
노동부장관	方 鏞 錫
여성부장관	韓 明 淑
건설교통부장관	林 寅 澤
해양수산부장관	金 昊 植
기획예산처장관	張 丞 玟

○出席政府委員

법무부차관	金 珏 泳
문화관광부차관	朴 文 錫
산업자원부차관	林 來 圭
중소기업청장	李 錫 瑛

【報告事項】

○特別委員長選任

政治改革特別委員會
委員長 姜在涉
(11월8일자)

○幹事選任

委員會	委員名	交涉團體
政治改革	許泰烈	한나라당
特別	千正培	새천년민주당

(11월8일자)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涉團體
辛基南	法制司法	文化觀光	새천년민주당
趙培淑	文化觀光	法制司法	새천년민주당

(11월8일자)

○議案提出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11월6일 황우여·김경천·김영선·김영진·김원웅·김황식·김홍신·민봉기·박세환·박인상·박진·서상섭·안영근·엄호성·이경제·이상희·이원형·이재정·전용학·주진우 의원 발의)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하겠음

대한민국국화에관한법률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황우여·고흥길·김경천·김원웅·김영선·김영진·김황식·김홍신·민봉기·박세환·박인상·박진·박주선·서상섭·안영근·이경제·이상희·이성현·이원형·이재정·엄호성·원철희·주진우·전용학 의원 발의)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하겠음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천정배·송영길·김근태·정동영·임종석·배기운·김택기·김홍신·문희상·이재오·김방림·김태홍·조정무·정동채·정세균·조배숙·이강래·김원기·김용학·김원웅·권오을·권기술·서상섭·신기남·심재권·안상수 의원 발의)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하겠음

最低賃金法中改正法律案(오세훈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오세훈·홍사덕·남경필·윤경식·김홍신·김덕규·정병국·박상희·박인상·김성조·전재희·도종이·김부겸·권영세·심규철·박종희·심현태·서상섭·이연숙·홍준표·김영선·김락기·이승철·서병수·김병호·정범구·김용학·김문수·원희룡·이우재·김영춘·이성현·손희정·박인상·임인배 의원 발의)

環境勞動委員會에 회부하겠음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미경 의원 발의)

(11월7일 이미경 의원 외 20인 발의)

教育委員會에 회부하겠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

(11월7일 심규철·이상희 의원 외 26인 발의)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에 회부하겠음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11월8일 정진석·이경제·현승일·박승국·김병호·심재권·이원창·배기선·정병국·이윤성·고흥길·김황식·전재희·이연숙·홍준표·권영세·설훈·최병국·이재오·이인기·박원홍·권오을·원유철·이재선·강창희·이원성·오세훈·박주천·심규철·송광호·원철희·강숙자·홍사덕·김성호·김부겸·박근혜·김용학·원희룡·안택수·박진·이성현·이용삼·엄호성·강신성일 의원 발의)

教育委員會에 회부하겠음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16건)

(11월8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정보위원회 제외) 제출)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8일 教育委員長 제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대안)

(11월8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 제출)

放送法中改正法律案(代案)

-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건 11월8일 文化觀光委員長 제출)
-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代案)
-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대안)
- 母子保健法中改正法律案(代案)
-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代案)
-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5건 11월8일 保健福祉委員長 제출)
-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代案)
 (11월8일 環境勞動委員長 제출)
- 산지관리법안에대한수정안
 (11월8일 정병국·박혁규 의원 외 29인 발의)
- 議案審査
-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5월14일 정부 제출)
 (11월8일 教育委員長 보고)
- 電氣通信基本法中改正法律案
 (11월7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 제출)
 (11월8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 보고)
- 産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中改正法律案
 (7월23일 정부 제출)
- 腦研究促進法中改正法律案
 (10월11일 정부 제출)
- 科學館育成法中改正法律案
 (10월21일 정부 제출)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곽치영 의원 대표발의)
 (11월23일 곽치영·임채정·김영배·정동영·김근태·유재건·김효석·최용규·이종걸·신기남·최선영·박용호·정범구·허운나·장영달·조성준·문희상·김성순·이정일·임종석·박상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8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 보고)
- 放送文化院振興法中改正法律案
 (7월12일 정부 제출)
 (11월8일 文化觀光委員長 보고)
- 特許管理特別會計法改正法律案
 (9월17일 정부 제출)
- 發明振興法中改正法律案
 (9월25일 정부 제출)
- 辨理士法中改正法律案
 (1월4일 정부 제출)
- 韓國電力公社法中改正法律案
 (9월25일 정부 제출)
- 海底鑛物資源開發法中改正法律案
 (10월11일 정부 제출)
- 2003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10월17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11월8일 産業資源委員長 보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5월17일 김성순·김방림·김태홍·배기선·김홍신·최선영·김근태·유재건·박양수·심재권·이재정·조재환·이정일·김원웅·김옥두·배기운·강성구·이훈평·임채정·신기남·김윤식·이창복·김명섭 의원 발의)
- 醫療法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
 (10월18일 김명섭·김상현·김성순·김찬우·김홍신·남경필·박시균·심재철·이재선·이원형·김방림·김태홍·민봉기·배기선·배기운·손희정·유재건·이재정·이훈평·조정무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8일 保健福祉委員長 보고)
 이상 15건 원안대로 의결
-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中改正法律案
 (2001년10월19일 정부 제출)
 (11월8일 國會運營委員長 보고)
- 稅務士法中改正法律案
 (5월14일 정부 제출)
- 關稅士法中改正法律案
 (7월6일 정부 제출)
-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 10월17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8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박창달 의원 대표발의)
 (5월16일 박창달·강숙자·이해봉·이규택·이성현·김정숙·맹형규·윤경식·이재오·김무성·윤두환·김덕규·현경대·황우여·조정무·고홍길·전재희·임종석·정병국·현승일 의원 발의)
-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박승국 의원 발의)
 (10월16일 박승국 의원 외 21인 발의)
-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현승일 의원 대표발의)
 (7월23일 현승일·장성민·황승민·김택기·김태홍·오세훈·김홍신·윤경식·권기술·박창달·정병국·서상섭·김성조·안상수·심재권·박양수·김화중·김형오·이원형·김원웅·이해봉·김용학

·고흥길 의원 발의)

大韓教員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5월1일 정부 제출)

大韓民國學術院法中改正法律案

(8월16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8일 教育委員長 보고)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 10월4일 정부 제출)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안

(10월24일 정부 제출)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中改正法律案

(6월25일 정부 제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곽치영 의원 대표발의)

(10월2일 곽치영·강재섭·권영세·김근태·김상현·김영춘·김영환·김원기·김형오·김희선·남궁석·박근혜·박상희·박헌기·박진·이상수·이종걸·임종석·조배숙·조한천·허운나 의원 발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안(김형오 의원 대표발의)

(10월19일 김형오·박상희·김영춘·강재섭·곽치영·권영세·김영선·김원웅·김진재·김희선·남궁석·박근혜·박진·박헌기·이상희·이종걸·허운나·조한천·이원성·김효석·윤한도·박원홍·윤영탁·엄호성·박주천·강창희·박세환·김기배·박주선·유홍수·정동영·전용원·최병렬·김문수·안경률·권태망·이부영·정형근·원희룡·김영환·김부겸·이재선·양정규·김무성·오세훈·권철현·권오을·김병호·김광원·정문화·박혁규 의원 발의)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10월11일 정부 제출)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中改正法律案

(10월17일 정부 제출)

(이상 8건 11월8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 보고)

산지관리법안

(4월20일 정부 제출)

(11월8일 農林海洋水産委員長 보고)

特許法中改正法律案

意匠法中改正法律案

實用新案法中改正法律案

商標法中改正法律案

(이상 4건 6월19일 정부 제출)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0월18일 정부 제출)

地域信用保證財團法中改正法律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9월9일 배기운·박상규·신현태·강인섭·김방림·이재선·백승홍·김태홍·손희정·김택기·황승민·이근진·조성준·임인배·안영근·강성규·정철기·김홍일·김화중·남궁석·김충조·설훈·강운태·김원길·조한천·박종우·김성순·김영배·김희선·천용택·정동채·박주선·김덕규·유재규 의원 외 18인 발의)

(이상 6건 11월8일 産業資源委員長 보고)

藥事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5월22일 김홍신·최영희·정범구·심재권·권기술·서상섭·김원웅·신기남·문희상·오세훈·정병국·김원기·안영근·김근태·김성순·김명섭·김태홍·박시균·손희정·이재정 의원 발의)

結核豫防法中改正法律案

(9월18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8일 保健福祉委員長 보고)

2003년도예산안

(10월1일 정부 제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월5일 정부 제출)

이상 28건 수정의결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조웅규 의원 대표발의)

(2000년10월13일 조웅규·김덕룡·박원홍·박재욱·안경률·김영춘·이주영·현승일·신현태·임태희·정병국·윤한도·심재철·김만제·김원웅·정의화·이원형·강재섭·박주천·이원창·이인기·강신성일 의원 발의)

(11월8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 보고)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10월23일 최영희·김옥두·김원기·김홍일·박양수·배기운·유재규·이종걸·이훈평·장성원·장태완 의원 외 10인 발의)

國民年金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4월2일 심재철·하순봉·신현태·허태열·안택수·윤경식·오세훈·윤여준·이원창·맹형규·박원홍·신영국·이원형·임인배·윤한도·안영근·남경필·이성현·고흥길·황승민·엄호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8일 保健福祉委員長 보고)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조응규 의원 대표발의)
(2000년7월19일 조응규·이주영·최선영·박원홍·윤한도·김성순·이원형·최영희·김택기·박재욱·장정언·임진출·원희룡·김동욱·이인기·고홍길·박승국·김용균·임인배·박창달·강신성 일 의원 발의)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5월14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8일 教育委員長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최병렬 의원 발의)

(2001년12월21일 최병렬 의원 외 54인 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월5일 김영춘·서상섭·김무성·신영국·심규철·박원홍·김형오·맹형규·김호일·강재섭·김성조·윤영탁·김학송·안영근·정의화·김락기·김문수·권오을·이상희·김용균·김기춘·최병국·손학규·오세훈·김용학·이승철·이성현·정병국·남경필·원희룡·김경천·심재권·정동영·김희선·최병렬·김원웅·정인봉·박종희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월23일 이종걸·김성순·곽치영·배기선·김명섭·최용규·이희규·이재정·김성호·김윤식·신기남·김태홍·송영길·천정배·장영달·박상규 의원 외 4인 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경식 의원 대표발의)

(3월15일 윤경식·강창희·김진재·박희대·이근진·박창달·심규철·오세훈·이주영·박주천·김정숙·이상배·정인봉·심재권·김성순·황승민·정병국·이인기·신현태·안영근·원희룡·김근태·이재오·홍준표·강숙자·김일윤·최병국·강재섭·심재철·전재희·윤두환 의원 외 1인 발의)

(이상 4건 11월8일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長 보고)

放送法中改正法律案(고진부 의원 대표발의)

(2001년4월20일 고진부·이원형·심재철·전갑길·김태홍·윤여준·송훈석·심재권·장정언·최영희·김희선·박주선·정병국·이미경·정형근·윤철상·나오연·김민석·김명섭·설송웅·강신성 일 의원 외 1인 발의)

放送法中改正法律案(조응규 의원 대표발의)

(4월28일 조응규·최병렬·김덕룡·서청원·박관용·김영구·남경필·정병국·김일윤·고홍길·정인봉·심재권·박원홍·이원창·임인배·윤영탁·김형오·이원형·윤한도·이인기 의원 발의)

放送法中改正法律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월8일 심재권·이창복·안영근·김화중·현경대·장성원·고홍길·김홍신·김원기·송훈석·유재건·최명현·이훈평·문희상·김호일·박양수·김운용·김경천·김민석·김방림·이강래·박상규·최영희·김옥두·김태홍·송영길·임채정·임종석·이호웅·박인상·정대철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고홍길 의원 대표발의)

(2001년6월29일 고홍길·강신성일·강재섭·강창희·권태망·김만제·김영일·김용학·김일윤·김진재·김홍신·남경필·목요상·민봉기·박세환·박시균·박창달·박혁규·서청원·손희정·신경식·신영균·오세훈·윤여준·이규택·이연숙·이원창·이원형·이인기·이주영·전재희·정대철·정문화·정병국·정창화·조성준·조응규·조정무·최용규·현경대·황우여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17일 이미경·강신성일·문석호·박인상·김홍신·이낙연·설훈·김운용·최용규·박양수·장영달·윤철상·이재정·임채정·임종석·이희규·정대철·이창복·신기남·정범구·허운나·김성호·김원웅·김근태·심재권·천정배·김일윤·강성구·김윤식·정동채·최재승 의원 발의)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발의)

(2001년12월11일 심규철 의원 외 21인 발의)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案

(2001년11월26일 정부 제출)

(이상 7건 11월8일 文化觀光委員長 보고)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

(2001년4월9일 김태홍·김화중·장태완·김원길·고진부·김희선·정동채·최선영·윤여준·안영근·김명섭·김성순·최영희·김홍신·김부겸·이재정·이근진·배기선·전갑길·이종걸 의원 발의)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

(2001년10월11일 김태홍·정범구·이창복·김명섭·김화중·천정배·정철기·이강래·김원웅·유재건·정장선·최용규·김경천·김찬우·추미애·

이미경·박시균·전갑길·배기운·최영희·고진부·정동영·신기남·박인상·배기선·김성순·김홍신·이원형·김희선·심재철 의원 외 1인 발의)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2001년10월17일 이원형·조웅규·박세환·김용균·이강두·이상득·임인배·강재섭·심재철·박시균·윤한도·손희정·정의화·김찬우·백승홍·윤영탁·이해봉·박종근·이원창·윤여준·박승국 의원 발의)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

(2001년10월31일 김성순·윤여준·김홍신·김태홍·김명섭·조웅규·임종석·김원웅·김방림·이창복·추미애·문석호·김영배·장영달·정인봉·정대철·김충조·박상희·송영길·조한천·조성준·박인상·임채정·이훈평·김근태·유재건·김옥두·조재환·이재정·김택기·박양수 의원 발의)

國民健康保險法中改正法律案(전갑길 의원 대표발의)

(1월22일 전갑길·김영진·박주선·신계륜·윤철상·허태열 의원 외 17인 발의)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김태홍 의원 대표발의)

(2001년10월11일 김태홍·천정배·김원웅·정범구·이창복·김명섭·김화중·정철기·유재건·정장선·최용규·김경천·김찬우·추미애·이미경·박시균·전갑길·배기운·최영희·고진부·정동영·신기남·박인상·배기선·김성순·김홍신·이원형·김희선·심재철 의원 외 1인 발의)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2001년 10월17일 이원형·조웅규·박세환·김용균·이강두·이상득·임인배·강재섭·심재철·박시균·윤한도·손희정·정의화·김찬우·백승홍·윤영탁·이해봉·박종근·이원창·윤여준·박승국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조희욱 의원 대표발의)

(2001년10월18일 조희욱·강숙자·황승민·김용학·원희룡·권기술·윤두환·신현태·김근태·오세훈·이주영·송영진·박양수·심규섭·원철희·김성조·윤영탁·정인봉·정대철·김부겸·이양희·이원창·김명섭·허태열·배기운·이재선·함석재·송광호·이완구·김종필·정진석·김학원·조부영·오장섭·송영길·박주천·정우택·김중호·안대륜 의원 발의)

모·부자복지법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8월7일 김홍신·김원웅·권기술·서상섭·김부겸·정병국·이원형·김원기·권오을·이호웅·심재권·박인상·김명섭·박종희·김근태·이완구·원희룡·김태홍·윤여준 의원 외 1인 발의)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6일 김홍신·김명섭·심재권·김원기·권기술·오세훈·김원웅·추미애·김성순·심재철·원희룡·이재정·윤여준·정병국·김근태·김부겸·박시균·김태홍·신기남·김찬우·이성현 의원 발의)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명섭 의원 대표발의)

(4월17일 김명섭·조정무·김홍신·김방림·김성순·박시균·최영희·배기선·김태홍·유재건·민봉기·이재정·이훈평·윤여준·홍준표·강창희·서청원·고진부·손희정·김찬우·박혁규 의원 발의)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2000년11월28일 김홍신·윤여준·김원기·이성현·김부겸·김찬우·서상섭·이원형·안영근·김명섭·오세훈·임종석·김태홍·김영춘·박시균·권오을·김문수·김원웅·원희룡·이호웅 의원 발의)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12일 김홍신·김원웅·오세훈·김근태·심재권·김민석·정병국·김성순·고진부·이재정·이미경·이원형·추미애·원희룡·김명섭·권오을·송영길·김원기·임종석·안영근·이부영·김문수 의원 발의)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13일 추미애·김홍신 의원 외 19인 발의)

(이상 14건 11월8일 保健福祉委員長 보고)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김락기 의원 대표발의)

(2001년3월19일 김락기·김일운·박창달·이재오·김성조·박혁규·이원형·허태열·이성현·김용갑·원희룡·조웅규·손태인·김찬우·김태호·안상수·오세훈·김원웅·권기술·심규철·김중하·정병국·안영근·이주영·김호일·황승민·윤두환·김용학·김영춘·김문수·황우여·전재희 의

원 외 101인 발의)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신계륜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12일 신계륜·김민석·박양수·송영길·원유철·임종석·최용규·최명현·김홍신·이재정·원희룡·오세훈·박인상·전갑길·김원용·이강래·이미경·이호웅·김락기·심재권·김영춘·서상섭·한화갑·김근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8일 環境勞動委員長 보고)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10월22일 김효석·남궁석·정동채·김희선·배기운·이낙연·김성호·김윤식·김영진·김충조·박주선·강운태·천정배·이용삼·김방림·박상규·정대철·문석호·김화중·박상희·정동영·장성원·김태홍·송영길·이종걸·이해구 의원 발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10월24일 김영진·정동채·김화중·박주선·고진부·김태홍·김희선·이용삼·김성호·이종걸·김원기·김운용·김방림·이정일·정대철·전갑길·천용택·강운태·장성원·유재규·이낙연·배기운·원철희·정철기·정장선·박상규 의원 발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박재욱 의원 대표발의)

(10월25일 박재욱·김중하·권기술·김용학·김광원·하순봉·김일윤·주진우·이운성·현경대·이상배·정창화·김동욱·윤두환·박희태·이상득·박현기·이인기·이원형·윤한도·이양희·강신성일·이우재·정병국·김용갑·양정규·이해구·허태열·이병석·박시균·안택수·이재창·김영일·전용원·심규철·김찬우·김학송·이방호·윤경식·권오을·김문수·이경재·강성구·최연희·안경률·김정부 의원 발의)

이상 3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출

○請願提出

무쏘픽업차량특별소비세부과방침철회등에관한청원

(2002년11월7일 경기도 평택시 도곡동 398-5 최명용 외 157인으로부터 元裕哲 의원의 소개로 제출)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하겠음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제에관한청원

(2002년11월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4동 509-9 관악빌라 401호 이기후 외 65인으로부터

李揆澤 의원의 소개로 제출)

政務委員會에 회부하겠음

농지법시행령개정에관한청원

(2002년11월7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574-1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정태정 외 58인으로부터 沈揆喆 의원의 소개로 제출)

農林海洋水産委員會에 회부하겠음

노근리미군양민학살사건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2002년11월7일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797-7 정은용 외 66인으로부터 沈揆喆 의원 외 23인의 소개로 제출)

○請願審査

공격용헬기도입사업폐기에관한청원

(2001년10월30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29-15 북조빌딩 502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으로부터 金元雄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국방부의F-15K선정철회와차기전투기(F-X)사업연기촉구에관한청원

(2002년4월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29-15 북조빌딩 502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으로부터 金元雄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8일 國防委員長 보고)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관한청원

(2002년4월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각중 외 1인으로부터 沈揆喆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8일 財政經濟委員長 보고)

고용보험법개정에관한청원

(2000년11월2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3층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김중배로부터 韓明淑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8일 環境勞動委員長 보고)

보건진료소확대설치등에관한청원

(2001년1월31일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2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 도종환으로부터 金洪信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개정제에관한청원

(2001년6월2일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2리 경북·대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 도종환 외 7인으로부터 金聖順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8일 保健福祉委員長 보고)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어린이안전교육법적의무화에관한청원

(2002년1월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5-21
배양빌딩 2층 안전시민연대 대표 송자 외 1
인으로부터 崔秉烈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8일 保健福祉委員長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書面答辯書提出

소음·진동규제법제23조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청주지검의총정리뷰수사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국민연금미납자대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6급담당제개선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우유수급확대대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5건 11월7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報告書

2002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16건)

(11월8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정보위원회 제
외) 제출)